

 해양수산부 보 도 자 료  <i>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i>			
보도 일시	2022. 7. 25.(월) 석간 2022. 7. 25(월) 06:00	배포 일시	2022. 7. 22.(금) 오후
담당 부서 <총괄>	어업자원정책관 어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성원 (044-200-5510)
		담당자	사무관 김도한 (044-200-5518)

**「수산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 어구의 전 주기 관리 강화, 총허용어획량 중심 어업관리 등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수산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과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하여 2022년 7월 25일(월)부터 2022년 9월 3일(토)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해양수산부는 어구의 생산부터 판매, 사용, 수거 등 전주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으로 어업관리 정책을 전환하기 위해 올해 1월 「수산업법」을 전부개정하였고, 어업인 의견 수렴 등 6개월 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하위법령 제·개정령안을 마련하였다.

* Total Allowable Catch, 어종별·업종별로 연간 총 어획할 수 있는 총량을 정하여 관리

특히, 이번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정령안은 어업인들을 포함한 국민들이 「수산업법」 관계 규정을 더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총 4개로 운영되고 있던 「수산업법」과 관련된 해양수산부령*을 통합하여 마련한 것이다.

* 어업의 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 규칙,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어획물 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이번 하위법령 제·개정령안에는 우선, 어구의 전주기 관리 강화를 위한 세부 절차 등이 담겨 있다. 「수산업법」에서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어구 생산·판매업을 하려는 자의 신고 방법과 의무 이행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어구마다 소유자 등을 표시하는 어구실명제의 대상을 어구의 사용량, 회수량 등을 고려하여 연근해 자망어업, 안강망 어업, 통발어업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어구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폐어구 집하장 설치, 어구 일제수거 기간 등도 규정하였다.

아울러, 「수산업법」에서 총허용어획량(TAC) 기반 규제완화 시범사업의 근거를 규정함에 따라 이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위치발신장치 부착 및 작동, 조업실적 보고체계 구비, 어선안전 및 조업감시 등을 위한 시스템 구비 등으로 규정하였다. 지자체 별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자원관리를 할 수 있도록 총허용어획량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 어업규제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신설하였다.

이외에도,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중 어구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구체화하여 수산자원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외적으로 커지고 있는 해양포유류 보호 필요성에 대응하여 연근해어선에 포유류 혼획 시 보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도 새로 추가하였다.

김준석 수산정책실장은 “해양생태계 보호와 수산자원관리를 위하여 새롭게 도입된 어구관리제도 및 자원보호조치 등에 대한 세부 운영 방안과 절차를 이번 개정안에 반영하였다.”라며,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어구의 생산부터 수거·폐기까지 철저히 관리하여 유령어업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을 실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022년 9월 2일(금)까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참고

수산업법 하위법령 전부개정(제정)안 주요내용

◆ TAC 중심 어업관리, 지자체 자율성 확대, 어구관리 강화 등을 반영한 「수산업법」 전부개정 사항 이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

* 추진방법: (시행령) 전부개정, (시행규칙) 4개**의 해수부령을 통합하여 신규제정

** 허가규칙, 면허규칙, 어획물운반업 등록규칙, 연근해어업 조업상황보고 규칙

1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추진

- (시행령)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참여 요건, (시행규칙)어업규제 완화 적용 내용 및 기간, 대상자 선정 절차 등 필요 사항 반영

2 어획량규제 기반 지자체 자율성 확대

- (시행령)시·도에서 어구·어법 등을 별도로 고시하여 시행 할 수 있기 위한 의무적 이행요건(연안자원 관리계획, TAC 설정 등) 명시

3 어구의 생애 전 주기(생산·판매·이용·수거·폐기 등) 관리 강화

- (어구생산·판매업 신고제) (시행규칙)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 절차와 방법을 정하고, 지자체에 신고 할 수 있는 절차 반영
- (어구판매량 제한 등) (시행규칙)판매량 제한이 필요할 경우 중앙수산 조정위원회에서 어구 판매량과 판매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실태조사) (시행규칙)어구의 생산, 유통, 현황 및 폐어구 발생 현황 등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 (어구실명제) (시행령)어구실명제를 해야하는 어업을 연근해 자망, 안강망, 통발 어업인으로 정하고, (시행규칙)어구실명제 표시방법은 별표(기존 허가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방법 준용)로 정하도록 규정
- (어구일제회수) (시행령)어구수거 해역 및 수거기간 등을 정하고, (시행규칙)어구 수거해역 및 수거기간 지정 통보 절차 반영
- (폐어구 수거) (시행령)폐어구, 유실어구의 소유자 부담 범위와 폐어구 수거 처리 관련 사업 지정 및 권한의 위임 위탁의 범위를 정하고, (시행규칙)폐어구 집하장 설치 방법 등을 정함

4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과 민원처리 결과반영 및 조문정비

① 「수산업법시행령」

-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수면과 겹치는 경우, 동의서를 받아야하는 경우와 사유서로 대체 할 수 있는 상황을 명확히 규정
- 나잠어업은 어선(보트 등 불인정)만 사용하여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맨손어업은 보트나 어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
- 신고어업에 사용되는 도구의 개발·변형시, 지자체 자율로 사용 도구와 조업시기를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
- 「수자원관리법」에 따른 금어기 기간에 자리 선점을 위한 어구의 선투망 방지를 위하여, 금어기간 중 어구 사용 금지를 명문화
- 구획어업에서 사용하는 닻, 닻줄 등 보조성격의 어구 부속품도 어구에 포함됨을 명시하고, 어장 설치시 어장구역 내에 위치하도록 명시
- 「양식산업발전법」 분법에 따라, 「수산업법 시행령」에서 분법 전에 사용하던 “양식장형망선”을 “마을어장형망선”으로 개정

② 「수산업법시행규칙」

- 마을어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에 전통적으로 사용해오던 ‘끄랭이’(끄레, 거랭이) 등 손틀 어구류를 추가
- 美 「해양포유류보호법(MMPA)」에 대응하여 해양포유류 혼획 실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연근해어선에 포유류 혼획 보고 의무 추가
- 허가어업(정치성구획어업)의 관리선과 면허어업(정치망어업, 마을어업)의 관리선 규정을 통합하고, 양식장형망선 명칭 변경(→마을어장형망선)
- 어장관리규약을 정하여 운영하는 규정은 있으나, 이를 지자체가 관리·감독하는 절차 규정이 없어 이를 마련
- 육소장망어업(현재의 들망어업) 허가를 받아 어업을 하고 있는 경남의 들망어업(6건)이, 장망어업 허가정수에 반영되어있어 이를 수정